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제2023-428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(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07 월 19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

2. 사업시행자 (변경없음)

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개요 (변경)

구 분	기 정	변경	비 고
가. 대지위치	강화새시장 공공주택지구 (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66번지 일원)	좌동	
나. 사업면적(m ²)	2,989.00	2,964.80	감 24.2m ²
다. 대지면적(m ²)	2,989.00	2,964.80	감 24.2m ²
라. 연 면 적(m ²)	2,743.94	좌동	
마. 사업규모	40호/아파트 1개동 (행복 40세대, 5~6층) 및 부대·복리시설	좌동	
바. 구 조	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	좌동	

4. 사 업 비(변경없음) : 12,849,711천원 (주택도시기금 1,800,480천원)

5. 사업기간(변경없음) : 사업승인 고시일 ~ 2023. 07.

6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

○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: 별첨1

○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: 별첨2

7. 기 타 :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,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지역본부(032-890-5363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[별첨1]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

1. 용도지역·지구·구역 결정(변경)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■ 강화군 용도지역 결정 총괄 조서

구 분			면 적(m²)			구성비 (%)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	411,202,733	-	411,202,733	100.00	
도 시 지 역	소 계		17,306,615	-	17,306,615	4.21	
	주거 지역	소 계	1,929,500	-	1,929,500	0.47	
		제1종일반주거지역	976,245	-	976,245	0.24	
		제2종일반주거지역	918,255	-	918,255	0.23	
		준주거지역	35,000	-	35,000	0.01	
	상업 지역	소 계	201,300	-	201,300	0.05	
		일반상업지역	201,300	-	201,300	0.05	
	공업 지역	소 계	538,115	-	538,115	0.13	
		일반공업지역	446,738	-	446,738	0.11	
		준공업지역	91,377	-	91,377	0.02	
	녹지 지역	소 계	14,578,700	-	14,578,700	3.54	
		생산녹지지역	2,972,885	-	2,972,885	0.72	
		자연녹지지역	11,605,815	-	11,605,815	2.82	
	미 지 정		59,000	-	59,000	0.01	
비 도 시 지 역	소 계		393,896,118	-	393,896,118	95.79	
	관리 지역	소 계	150,024,104	-	150,024,104	36.48	
		보전관리지역	42,065,124	-	42,065,124	10.23	
		생산관리지역	13,977,215	-	13,977,215	3.40	
		계획관리지역	90,904,056	-	90,904,056	22.11	
		미세분관리지역	3,077,709	-	3,077,709	0.75	
	농 립 지 역		243,287,561	-	243,287,561	59.16	
	미 지 정		584,453	-	584,453	0.14	

※ 기 정 : 강화군 도시개발과 내부자료(2016.9.29 기준)

■ 강화새시장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m ²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2,989.00	감) 24.2m ²	2,964.80	100.0	
도시 지역	소 계	2,989.00	감) 24.2m ²	2,964.80	100.0	
	제2종일반주거지역	2,989.00	감) 24.2m ²	2,964.80	100.0	

■ 강화새시장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면적(m ²)		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-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26번지 일원	제2종 일반 주거지역	2,989.00	감)24.2	2,964.80	150%	·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변경

[별첨2]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

구 역 명	위 치	면 적 (m ²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강화새시장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26번지 일원	2,989.00	감) 24.20	2,964.80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

구분	위 치	면 적(m ²)	결정사유서
변경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26번지 일원	2,964.80	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

2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: 게재생략
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: 게재생략 (군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)

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구 번호	면 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획지번호	위 치	면 적(m ²)	
1BL	2,964.80	1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26번지 일원	2,964.80	

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
결정조서 : 게재생략

마.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: 게재생략

4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

가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: 게재생략

나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: 게재생략